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45
----------	-------

발의연월일 : 2023. 4. 11.

발 의 자 : 박수영 · 류성걸 · 정찬민
박정하 · 유경준 · 김기현
김성원 · 정동만 · 조경태
전봉민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업자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기관명 또는 상호(법인명을 포함한다),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각 법인에 한정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 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업자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업자 공표)</u>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기관명 또는 상호(법인명을 포함한다),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각 법인에 한정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

동차관리사업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 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업자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